

---

무배당자유로설계전환특약  
연금 Course

---

# 무배당자유로설계전환특약

## 연금 Course

###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5조 【특약의 소멸】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 제4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 제 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5관 기타사항

- 제11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무배당자유로설계전환특약 연금 Course 약관

##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 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계약 만기일의 다음날로 합니다.(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

### 제 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종신까지입니다.

### 제 5조 【특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만기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 이라 합니다)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생존연금 (10회보증지급)
2.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사망시(즉시연금형 제외) : 사망보험금

####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4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 제 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위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관 기타사항

#### 제11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 1. 생존연금(약관 제7조 제1호)

구분		지급액
생존 연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로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즉시연금형, 거치연금형]  전환계약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10회 보증지급)

### 나. 사망보험금(약관 제7조 제2호)

구분		지급액
사망 보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에 사망시(즉시연금형 제외)	[거치연금형] 전환일시금의 10% + 적립액

- (주)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즉시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3. 제2호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 보험가입후  
10년이하는 연복리 2.5%, 10년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

5.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공  
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6. 「적립액」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합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7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생존 연금 (제7조 제1호)	회사가 생존연금 의 지급시기 도 래 7일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아 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생존연금 의 지급시기 도 래 7일이전에 지 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 시 이 율 의 50% 1년초과 기간:1%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생존 연금 (제7조 제1호)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 환급금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기 간: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